

# 자동이체 이용약관(이용기관용)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과 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자동이체 서비스(이하 “자동이체”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이체”란 납기일에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참가기관”이란 자동이체 자금의 출금과 입금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참가기관 접수”란 참가기관이나 결제원이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이용기관 직접접수”란 결제원에서 직접접수 승인을 받은 자동이체 이용기관(이하 “직접접수기관”이라 합니다)이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출금계좌변경”이란 고객이 참가기관 및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출금동의자료”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받은 출금동의내역을 말합니다.
7. “자료 송수신매체”란 이용기관과 결제원간 지로자료의 송수신 경로로 사용하는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e-giro.giro.or.kr)나 전용회선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8. “접근매체”란 이용기관 및 송수신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 나. 자료 송수신매체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9. “영업일”이란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10. “제휴사”란 결제원과 자동이체 정산대행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 이용기관에 자동이체 정산대행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1. “자동이체 정산대행업무”란 제휴사가 지로 업무처리를 위탁한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자동이체 수납금 정산대행, 전산업무 중계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정산대행업무 이용기관”이란 결제원으로부터 지로 이용승인을 받고 제휴사의 정산대행업무를 통해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3. “구독경제 서비스”란 고객이 선불로 정기결제하고 결제기간 동안 고객에게 맞춤형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만, 자유로운 구독 해지가 불가능한 서비스, 단발적인 물품 서비스의 판매 및 대여는 제외합니다.

###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결제원이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이용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전 1개월간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이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기관에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이용기관이 사전에 제공한 E-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기관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까지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이용신청 및 승인)

- ① 자동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일 14일 전까지 자동이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기관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계좌로 지로 이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신청기관은 제1항의 자동이체이용신청서 이용기관 직접접수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결제원은 자동이체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이용신청기관에 통지하며, 승인할 때에 일부 신청내용을 이용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의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까지 자동이체 이용에 필요한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5조(승인내용변경 및 이용해지)

- ① 이용기관이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원과 협의한 후 변경희망일 14일 전

까지 자동이체이용신청서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10일 전까지 자동이체이용신청서에 해지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결제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동이체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 제6조(입금계좌 정당성 확인)

결제원은 신규·변경 승인 시 이용기관의 수납금 입금계좌에 대한 정당성, 즉 이용기관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해당 참가기관에 수납금 입금계좌가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참가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대행업무 이용기관의 수납금 입금계좌에 대한 정당성은 해당 제휴사 명의로 참가기관에 수납금 입금계좌가 정상적으로 개설되어있는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 제7조(승인거절)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업종·업체에서 횡령, 사기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사회적 약자 침해 우려가 있어 자동이체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객이 타 기관 또는 요금과 혼동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호 또는 기 승인 이용기관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3. 고객의 관련 업종·업체에 대한 이용행태 등으로 해지가 번거로워 자동이체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이용기관과 고객 간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하여 자동이체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결제원이 분쟁 기타 민원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8조(승인취소)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또는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4. 제4조 제5항의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목적이나 다른 기관을 위하여 자동이체를 이용한 경우
6. 자동이체 이용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객과의 분쟁 처리를 지연한 경우
7. 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이용기관의 파산,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9. 정부기관에서 이용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10. 이용기관이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신청하거나 출금 청구한 경우

11. 이용기관이 결제원 및 참가기관의 출금동의자료 제출 요청 또는 약관 이행여부 점검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② 결제원은 직접접수기관이 제11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직접접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원이 제1항의 사유로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이용기관에게 시정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이나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청일로부터 취소 예정일 전까지 시정결과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용승인을 즉시 취소합니다.

⑤ 결제원은 승인을 취소한 이용기관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승인 및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이용기관에 대한 신규·변경·해지 승인과 승인취소의 효력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 제10조(참가기관 접수분의 처리)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전송한 참가기관 접수분의 처리결과를 전송일로부터 제2영업일 1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일시까지 참가기관이 접수한 신규신청분의 처리결과를 전송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을 불능처리합니다.

③ 참가기관은 해지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용기관의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해지 처리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은 출금계좌변경을 위한 기존 계좌의 해지신청은 불능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기관은 기존 계좌를 해지 처리하지 않습니다.

⑤ 이용기관은 하나의 납부자번호에 해지신청과 신규신청이 있으면 해지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11조(이용기관 직접접수)

①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1. 서면(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2. 전화 녹취

3.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② 직접접수기관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결제원이 정한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납부신청자의 계좌번호, 식별정보, 계좌

주 실명 및 인감(서명)을 통장 등과 대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신청자와 계좌주명의가 다르면 계좌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직접접수기관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납부신청자와 계좌주명의의 일치여부
2. 납부신청자와 계좌주명의가 다를 때에는 계좌주의 동의여부

④ 직접접수기관이 납부신청자(계좌주명의인 포함)의 해지 신청을 접수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⑤ 직접접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내용을 납부자의 자동이체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⑥ 직접접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자동이체 신규신청분에 대한 출금동의자료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납부동의자료 제출대상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출금동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직접접수기관은 전자금융거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납부자,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내용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내용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출금이 가능한 계좌종목은 납부신청자가 거래하는 참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⑨ 참가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 출금계좌에 대해 동일 납부자번호로 재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가기관을 통하여 신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접수기관은 해당 납부자에 대해 납부자번호를 달리하여 임의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이용기관 직접접수분의 처리)

① 직접접수기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내용 및 출금동의자료를 접수일로부터 제2영업일 1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직접접수기관이 납부자의 요청 등으로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기존 신청분을 해지 신청한 후 신규신청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13조(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접수분의 처리)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전송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접수분의 처리결과를 전송일로부터 제2영업일 1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일시까지 처리결과를 전송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을 불능처리합니다.

③ 해지신청의 경우 이용기관은 결제원 앞 처리결과 전송을 생략합니다.

#### 제14조(신청내용의 실시간처리)

자동이체 신청내용 실시간처리시스템을 구축한 이용기관은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신청내용을 처리합니다.

제15조(신청내용 자체해지)

- ①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납부자의 자동이체 등록내용을 자체해지하였을 때에는 동 내용을 상호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참가기관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납부자에 대한 고지)

- ① 이용기관은 자동이체 신청내용의 처리결과, 출금개시일, 출금방식 등을 최초 출금일 전일까지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 출금일,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이 적용되는 출금일 전일까지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기관은 자동이체 출금 청구내용을 해당월의 출금일 5일전까지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 출금 청구금액이 정액이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기관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 납부자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출금청구 요청 최소 7일 전까지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납부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참가기관은 이용기관 직접접수분의 신규 신청 결과를 참가기관에 등록된 계좌주 휴대전화번호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미신청자에게 신규 신청 결과가 통지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용기관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⑦ 이용기관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에 따른 필요 고지사항을 납부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17조(출금 청구 및 출금)

- ① 이용기관은 출금 청구명세를 해당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전 제1영업일 14: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기관은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자의 계좌에서 출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기관은 출금계좌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출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출금 청구명세에 따라 출금하되 자동이체 신청내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계좌에서는 출금하지 않습니다.
- ⑤ 이용기관이 부분출금방식을 선택한 경우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납부자의 계좌잔액이 출금 청구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출금할 수 있습니다.
- ⑥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출금청구 자료 및 이용기관 접수분에 대한 등록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출금청구 규모 변동폭 및 등록 오류율이 과다할 경우 이용기관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⑦ 결제원은 해당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전 제1영업일 21:00 이전에 제1항의 출금 청구명세가 오류로 확인되어 출금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이용기관의 동의를 받아 출금 청구명세 전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제18조(수납금의 입금)

①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자동이체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선택에 따라 출금일로부터 제3영업일, 제5영업일 또는 제7영업일에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정산대행업무 이용기관의 경우 해당 제휴사의 계좌를 이용기관의 계좌로 봅니다.

② 이용기관은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수납금이 잘못 입금된 경우 이를 참가기관이나 고객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19조(부당대금 출금시 처리)

① 결제원은 부당한 자동이체 대금이 출금 청구되었거나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출금 또는 입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원은 제1항의 입금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일 이후 발생하는 장표지로 또는 자동이체 대금에서 부당출금 대금을 차감하고 이용기관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출금결과의 통지)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지로입금통지서와 출금결과를 출금일 익영업일 06:00부터 자료 송·수신매체에서 조회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참가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나 지연제공 및 전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결제원은 출금결과 통지시각을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은 입금된 수납금이 지로입금통지서 및 출금결과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결제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결제원은 제2항의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처리결과를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④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수납자금의 부도 발생 시 출금결과를 재통지 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신용등급 평가 및 보증수단 제출)

① 결제원은 직접접수기관 승인 시 이용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평가하여 직접접수 보증수단 제출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② 제1항의 심사에 따라 보증수단 제출 대상인 이용기관은 월간 출금한도를 정하고 이에 대한 보증수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대행업무 이용기관은 해당 제휴사가 유효한 보증수단을 제출한 경우 보증수단 제출을 면제합니다.

③ 보증수단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용기관 거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하며, 보증수단의 만기일은 해당월 말일로 합니다.

④ 결제원은 보증수단의 만기월 20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까지 이용기관에 보증수단 갱

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이 보증수단을 갱신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의 출금 청구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수단의 보증금액은 월간 출금한도에 이용기관 신용등급에 따른 결제원이 정하는 보증금액 적용요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최저 보증금액은 500만원으로 합니다.

#### 제22조(신용등급 재평가)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신용등급을 보증수단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월 20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재평가합니다.

② 재평가 결과 이용기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증금액 적용요율이 상향되는 경우,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가되는 보증수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보증금액을 적용하여 월간출금한도가 축소됩니다.

③ 재평가 결과 이용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 보증수단 만기 시점의 신용등급으로 보증금액을 결정합니다.

#### 제23조(결제원의 의무)

① 결제원은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의 정보를 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자동이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결제원은 고객 또는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24조(이용기관의 의무)

① 이용기관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지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자동이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기관은 고객,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이 자동이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은 고객이 자동이체 거래내용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은 결제원 및 참가기관이 요청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신청서 등 출금동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기관은 결제원 및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의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기관은 고객이 정기결제의 철회, 취소, 환불요구 등을 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 특성,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⑦ 구독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기관은 자동이체를 통한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요금 수납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제25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전산기기의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 접근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 ③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기관이 납부자나 제3자에게 수납자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1. 이용기관의 전산 착오나 누락 등으로 자동이체되지 않은 경우
  - 2.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후에도 계속 자동이체된 경우
  - 3. 자동이체 미신청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경우
  - 4. 이용기관의 출금액 청구 착오로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경우
  - 5. 이용기관이 접근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6. 기타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④ 제3항의 사유로 참가기관이나 결제원이 자동이체 이용기관을 대신하여 납부자나 제3자에게 수납자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이용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6조(자료의 작성 및 송·수신)

-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정한 전산설계서에 따라 자동이체 자료를 작성하고, 자료송·수신매체를 이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기관은 결제원에 전송한 파일과 동일한 내용 또는 파일명으로 재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송파일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전송 마감시간 전까지 결제원에 삭제를 요청한 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 ③ 정산대행업무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자료는 해당 이용기관이 지정한 제휴사를 통하여 제1항의 전산설계서에 명시된 전송 마감시각까지 결제원에 도달하여야 하고,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자료 조회 및 수신 시점과 제휴사와의 자료 송·수신매체는 제휴사와 이용기관 간 계약에 따릅니다.

제27조(자료의 보관)

이용기관과 결제원은 제26조 제1항의 자료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28조(수수료)

- ①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거래하는 참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다만, 정산대행업무 이용기관의 경우 해당 이용기관이 지정한 제휴사가 거래하는 참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수수료는 수납금 입금 시 차감합니다.

제29조(영수증)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통장 기재내용에 대해 영수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0조(자료의 제공)

결제원은 자동이체 거래명세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서면통지의 효력)

결제원이 서면으로 이용기관에 통지하는 자료는 결제원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통상 도착하여야 할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이용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2015. 10. 30.)

이 약관은 2015. 10. 3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 7. 6.)

이 약관은 2016. 8. 1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7. 10. 11.)

이 약관은 2017. 11. 16.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8. 10. 23.)

이 약관은 2018. 11. 2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 6. 17.)

이 약관은 2020. 7. 23.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3. 2. 14.)

이 약관은 2023. 5. 15.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4. 12. 19.)

이 약관은 2025. 1. 27.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5. 12. 29.)

이 약관은 2026. 2. 6.부터 시행합니다.